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 정년 연장 등
인사상 우대조치 근거 마련〉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11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승진, 정년연장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4. 10.
3. 회 부 일 : 2025. 4.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과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25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승진, 정년연장 근거 마련

개정안은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령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자녀의 수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차등하여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호, 제17조의2 및 제2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소방공무원으로서 <u>순직한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u> 에 대해서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u><신 설></u>	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 ----- <u>다음 각 호의</u> ----- ----- <u>해당하는</u> ----- ----- ----- ----- ----- ----- ----- ----- 1. <u>순직한 사람</u>
<u><신 설></u>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제25조(정년) ① (생략) <u><신설></u> ② ~ ⑤ (생략)	<u>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u> <u>3.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u> <u>제17조의2(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① 소방청장은 소방령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u>②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의 기준과 승진심사 방법, 가점 부여 등 구체적인 승진 우대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5조(정년)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2명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1세, 자녀가 3명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2세, 자녀가 4명 이상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3세로 한다.</u> <u>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을 실증하여(제14조1)) 승진임용하도록 하고 있고, 승진 방식은 심사와 시험을 통해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서 승진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제14조제2항).

다만, ① 소방공무원으로 순직한 사람, ②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된 사람, ③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④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으로서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계급 특별승진키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7조2)), 이는 실적과

1) 「소방공무원법」

제14조(승진) ①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②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승진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다.

⑤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방공무원법」

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
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소방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로 보임.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현황을 살펴보면 현직 소방공무원이 특별승진을 한 경우는 포상, 업무유공 등 업무성과와 관련하여 실시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현황 >

연도	소 계	포상	업무유공	명예퇴직	공무사망
2020	303	7	133	161	2
2021	289	11	92	183	3
2022	389	9	161	215	4
2023	400	13	116	269	2
2024	348	11	135	200	2
계	1,729	51	637	1,028	13

(자료: 소방청)

참고로 「국가공무원법」은 다자녀양육자, 장애인, 이공계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³⁾,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소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는 다자녀

3. 제53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

3) 최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양육공무원(8급이하)에 대해 승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국가공무원법」에 마련되었음('24'12' 31. 개정).

「국가공무원법」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승진, 특별승진, 정년 관련 우대조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⁴⁾.

한편, 소방공무원은 현행법에 따라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을 적용받는데, 모든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이고, 특정직 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일반직 2급 ~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계급의 소방공무원에게는 각각 4년, 6년, 11년, 14년의 계급 정년을 규정하고 있음(제25조제1항⁵⁾).

개정안은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안 제17조제3항), 소방청장이 소방정 이하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다자녀양육자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24.12.31. 개정)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조의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소속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3.12.26. 개정)

4)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정책에 따라 다자녀 우대 조치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고 소방청은 밝힘.

5) 「소방공무원법」

제25조(정년) ①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

마련하며(안 제17조의2 신설), 자녀가 2명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1세, 자녀가 3명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2세, 자녀가 4명 이상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3세로 하는 등 자녀 수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연령을 높이는 내용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 2024년(잠정) 0.75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평균 출산율의 72.95%에 불과함⁶⁾. 이에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먼저, 「국가공무원법」(제26조⁷⁾)에 따른 다자녀양육자, 장애인, 이공계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 정책은 승진에서의 우대, 성과평가 가점 부여,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이 동점이 경우 선순위 부여, 주거 지원, 보육 정책 우대 등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다자녀양육 공무원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시행할 지는 사회적 합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이고,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는

6) 출처: KR Total Fertility Rate of Republic of Korea

(<https://database.earth/population/republic-of-korea/fertility-rate>) (자료검색일 25. 5. 21)

7) 상세 법문은 각주) 참조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승진·특별승진 요건이나 정년 요건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 해당 요건이 현행 인사 원칙과 부합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승진, 정년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제2조제3호가목8)).

다음으로, 개정안이 승진, 특별승진, 정년 등에 차등을 두는 요건으로 상정하고 있는 자녀의 유무나 자녀의 수는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의

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생략)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 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결과일 수도 있지만 불임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비자발적 무자녀 공무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임.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기관의 장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⁹⁾, 불임, 경제력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녀가 없거나 적은 공무원에게는 개정안의 내용으로 인해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전국의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 중 자녀가 없거나 1명 미만인 소방공무원은 전체의 62.0%이고, 전체 소방공무원의 평균 자녀 수는 1.03명으로 나타남.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자녀 수 현황(특별승진 관련)>

구분	계(명)	자녀 수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총계	67,334 (100%)	28,116 (41.8%)	13,599 (20.2%)	21,566 (32.0%)	3,822 (5.7%)	231 (0.3%)
소방령	2,044	84	255	1,403	282	20
소방경	7,172	372	987	4,693	1,058	62
소방위	14,704	1,564	2,945	8,435	1,645	115
소방장	15,143	4,619	4,764	5,067	671	22
소방교	17,081	11,367	3,879	1,692	136	7
소방사	11,190	10,110	769	276	30	5

(자료: 소방청)

9)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6

<전체 소방공무원의 자녀 수 현황(정년연장 대상 관련)>

합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평균
67,334	28,116	13,599	21,566	3,822	231	1.03

(자료: 소방청)

그 밖에 개정안과 동일하게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특별 승진·정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법률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¹⁰⁾, 공무원 전체에 대한 통일적인 인사정책 추진을 위하여 같은 취지로 발의된 다른 법률안의 심사 경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자녀의 수에 따라 승진과 정년 등에 차등을 두는 것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 간 차별 발생의 우려가 있어 조직 내 합의를 전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인사혁신처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승진을 우대 하여 출산·양육을 장려하고, 인구위기를 극복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715호, 2025.4.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706호, 2025.4.1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709호, 2025.4.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716호, 2025.4.10.),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712호, 2025.4.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708호, 2025.4.1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707호, 2025.4.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711호, 2025.4.1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710호, 2025.4.10.)

대해서는 이해하나 공무원 정년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로서 (2005헌마553), 인구 변화 외에도 민간 정년제도와 의 형평성,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함께 신규인력 유입을 통한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힘.

또한, 인사혁신처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 뿐 아니라 공무원로부터 배제되는 경우와 승진임용에 있어서도 보장되어야 하는바(2002헌마735, 2017헌마1183), 양육하는 자녀 수에 따른 정년연장 및 승진우대가 경제적·신체적 이유 등으로 자녀가 없거나 적은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공무원 임용의 원칙인 실적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지, 정년 및 승진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행정안전부는 정년은 직무의 특성과 효율적인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정연령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분을 보장하고 이후 근무관계를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제도로써 모든 공무원이 동등한 수준에서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별승진은 포상, 업무유공, 우수제안, 명예퇴직, 공무상 사망 등 공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에 대해 적용되며, 재직 중인 공무원은 명예퇴직, 공무상 사망 등 퇴직공무원과 달리 정원의 범위 내 임용하는 것으로 객관성과 타당성이 특히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부산소방지부)는 자녀 수를 기준으로 승진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발생시키는 제도로, 공무원 인사제도는 공적 기준과 직무역량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자녀 수와 같은 사적 요인을 기준으로 한 인사 우대는 공직 인사원칙과 명백히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개정안이 추구하는 목적, 즉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장려 정책은 승진·정년과 같은 인사제도가 아닌, 출산 장려금 확대, 주거 지원, 보육 시간 보장, 복지포인트 강화 등과 같은 복지 중심의 정책 수단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함.

문 의 처
02)6788-5351